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7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양부남 · 이광희 · 정진욱
김문수 · 이강일 · 김동아
이훈기 · 전진숙 · 박민규
한민수 · 김남희 · 이상식
윤준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피해를 낳고 있음.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 실제로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

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또는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제307조제3항,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항, 제313조제2항, 제314조제3항 및 제347조제3항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허위영상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허위영상등을 제출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14조제1항 중 “第313條의”를 “第313條第1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④ (생 략)</p> <p>第156條(誣告) (생 략) <u><신 설></u></p> <p>第307條(名譽毀損)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허위영상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第156條(誣告)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허위영상등을 제출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p>第307條(名譽毀損)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생략)

<신 설>

第309條(出版物等に 依한 名譽毀損) ① · ② (생략)

<신 설>

第313條(信用毀損) (생략)

<신 설>

第314條(業務妨害)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신 설>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09條(出版物等に 依한 名譽毀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13條(信用毀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14條(業務妨害) ① 第313條第1項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

제347조(사기) ① · ② (생략)

<신설>

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7조(사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전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
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